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3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5. 7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의거 폐지되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이 필요함.

## 2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위원회를 변경(안 제11조)
  - 기존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
  - 변경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
-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중 “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”를 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기금의 운용심의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<u>부산광역시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</u>에서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1조(기금의 운용심의) ----- ----- <u>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